

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왔고, 일방적·전시성·일회성 형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노정해왔습니다.

이에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상시적이고 체계성 있게 논의·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
조례안 개정을 통해 『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평화통일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수립·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□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!

『지방자치법』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.

본 의원은 이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수도 서울의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